

kiri Weekly

2015.2.2 제319호

포커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논의 및 검토 방향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글로벌 이슈

유로지역 불확실성 확대 요인과 시사점
합법적 비트코인 거래소 개장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논의 및 검토 방향

정원석 연구위원, 오병국 연구원

요약

■ 최근 정부는 저축 장려를 위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 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되고 있음. 영국은 예·적금 상품과 금융투자상품에,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ISA 계좌 수와 적립액은 꾸준히 늘어났으나 계좌의 78%가 단기 입출금이 용이한 예금형임. 따라서 ISA 도입에 따라 장기저축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장기저축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계좌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¹⁾

- ISA 이용 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허용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구성과 관리 및 상품 이전이 가능함.
-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비과세)을 부여해 저축·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임.

■ 우리나라의 ISA 도입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고 ISA를 이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간 자유로운 이전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 9. 1),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 기존 은행의 재형저축, 주택청약 저축, 증권외의 소득공제 장기펀드, 보험의 저축성 보험 상품 등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을 정비하여 ISA로 통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ISA를 이용해 해당 상품 간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해 저축자 편의를 증진하고 금융상품 간 경쟁을 유도함.

■ 영국은 낮은 저축률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기존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여 ISA를 도입함.

- 주식양도 차익과 배당소득이 면세되는 PEP(Personal Equity Plan)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TESSA(Tax 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를 정비하여 ISA로 통합함.²⁾
- ISA 도입 당시 투자 가능 상품별로 증권형, 예금형, 그리고 보험형 ISA가 존재했으나 보험형은 상대적으로 호응이 적어 2005년 폐지되었음.³⁾
 - 이후 보험형 ISA 대상 상품 중 투자형 상품은 증권형으로, 배당형 상품은 예금형으로 편입되었으나 전체 중 그 비율은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함.

■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ISA 관리자로 감독기관⁴⁾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 은행, 협동조합, 집합투자업자 등에 ISA 계좌를 개설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음.⁵⁾

- 주식형의 경우 18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15,000 파운드를 한도로 주식, 공사채,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예금형의 경우 16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15,000 파운드를 한도로 예·적금과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음.⁶⁾
 - 연간 투자 한도는 초기 7,000 파운드에서 2013년 11,520 파운드로 증가하였고 2015년 15,000 파운드로 증가하였음.
- 계좌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음.

■ ISA 도입 이후 계좌 수 및 적립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⁷⁾

- ISA 시행 초기 900만 계좌이던 가입자 수는 2014년 현재 약 1,350만 계좌로 성장하였음.
 - 예금형 가입자가 78%, 증권형 가입자가 22%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3) HM Revenue & Customs(2014),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4)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5) 영국 정부(<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how-to-open-an-isa>).

6) 영국 정부(<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

7) HM Revenue & Customs(2014),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 가입액 기준 시행초기 약 290억 파운드였던 누적 가입액은 2014년 570억 파운드로 성장함.

■ 일본은 2014년 1월부터 가계의 저축 증대와 금융투자 촉진을 위해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제도를 시행하였음.

●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가처분 소득 대비 1%를 하회⁸⁾하며 예·적금 및 주식·보험 등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가구 비율이 2012년 기준 25%에 이르렀음.⁹⁾

〈표 1〉 영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ISA

구분	영국 ISA		일본 NISA	한국형 ISA(예정)
	증권형	예금형		
대상자	18세 이상 거주자	16세 이상 거주자	20세 이상 거주자	일정소득 이하
대상 상품	상장주식, 공사채, 펀드 등	예·적금, 공사채, MMF 등	상장주식, 공모주식 펀드 등	예·적금, 펀드, 보험
상품간 이전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대상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	이자 수익	배당, 양도차익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	무기한	무기한	5년	-
인출 제한 기간	없음	없음	없음	-
연간적립액 한도	£15,000	£15,000	¥1,000,000	존재
누적잔고 상한	없음	없음	¥5,000,000	존재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2014. 9. 1),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 참조.

■ NISA는 2014년 1월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10년 간 연 100만 엔을 상한으로 NISA 계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주식과 펀드로 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양도소득¹⁰⁾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해 취득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증권회사, 은행 그리고 우체국에서 NISA를 개설할 수 있음.
- 최초 5년 이후 추가로 5년간 비과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NISA 대상 증권은 상장주식, 외국상장주식, 공모주식 집합투자 증권, 상장주식 집합투자 증권 (ETF), 부동산집합투자증권(REITs) 등임.

8) OECD(2014), OECD Economic Outlook No. 95(Database).

9) 금융청(2013), 新証券税制 “NISA(ニーサ) が平成26年1月からスタート!”; 전창민·이현정(2013) 재인용.

10) 일본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음.

-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가계의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율¹¹⁾ 제고를 위해 NISA 투자 가능 상품을 정기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함.

〈표 2〉 한국형 ISA와 기존 세제특례상품과 비교

구분	한국형 ISA	재형저축	저축성보험
대상자	일정소득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제한 없음
상품간 이전	가능	불가	불가
비과세 기간	-	7년(+3년 가능)	제한 없음
최소납입 기간	-	7년	10년
연간적립 한도	존재	1,200만 원	없음
저축 기간	중·단기	중기	장기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2014. 9. 1),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 참조.

■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국내 도입 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이 없고 상품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 저축 증대에는 효과적이거나 장기저축 증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가입자와 적립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단기 입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예금형 ISA¹²⁾ 위주로 성장하였음.
- ISA의 도입으로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저축이 단기저축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저축 비과세 등의 기존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의 특성과 국민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ISA 대상 상품을 구성해야 함.
 - 보험 상품은 가입 시 필요 사업비를 수취하는 구조로 인해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바꿀 수 있는 ISA의 장점을 살릴 수 없으므로 ISA 편입은 적절하지 않음.
 - 일본과 유사하게 예금·현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¹³⁾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상품 위주의 ISA 상품 선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kiri**

11) 일본의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율은 16%로 한국 26%, 미국의 54%, 유로존의 30%에 비해 낮은 반면 금융자산 중 예·적금 비율은 5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함. 출처: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 대조표(2014); 유로존은 ECB; 박덕배(2014), 『가계자산구조특징과 시사점』을 재구성함.
 12) is4profit(<http://www.is4profit.com/is4money/savings-and-investments/isas.html>).
 13)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중 예·적금 비율은 46.5%로 OECD 34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임(일본은 4번째). 출처: OECD(2014),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2014.